

서울특별시 진접선(4호선연장) 차량기지 건설사업 도시철도  
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3542호
- 다. 제출일자 : 2026. 2. 9.
- 라. 회부일자 : 2026. 2. 12.

## 2. 제안사유

- 진접선(4호선 연장)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준공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준공기한에 맞게 기본계획상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개 요

- 건 명 :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(안)

- 위 치 :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,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
- 규 모 : 차량기지 197,400 $m^2$ , 입출고선 4.9 $km$ , 창동차량기지 철거
- 공사기간 : '18. 12. ~ '27. 6.
- 총사업비 : 7,078억원

#### 나. 추진경위

- '13.12.19. : 기본계획 수립 고시(국토부)
- '16.12.12. : 기본계획 변경(차량기지 위치) 고시(국토부)
- '18. 9. 5. : 차량기지 사업계획승인 고시(국토부)
- '18.12.31. : 공사착공
- '26. 1. : 마무리공사 중

#### 다. 사업기간 변경(규모변경 없음)

- 당 초 : 2010년 ~ 2024년
- 변 경 : 2010년 ~ 2027년

#### 라. 변경사유 :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공사 준공기한과 동일하게 변경

- 용지보상 지연 및 화물연대 파업 등에 따른 공정순연

구 분	준 공 기 한		비 고
	당 초	변 경	
1공구	'18.12.31 ~ '24.10.29	'18.12.31 ~ '26.02.28	
2공구	'18.12.31 ~ '26.02.26	'18.12.31 ~ '27.06.30	

마. 위치도

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철도법 제6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의견청취안은 지하철 4호선 연장으로 기존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로 이전하는 “진접선(4호선 연장) 차량기지 건설사업”(이하 “차량기지 사업”)의 사업기간이 1년이상 연장되면서 「도시철도법」 제6조1)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2) 등에 따라 동 사업의 “도시철도 기본계획”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변경·시행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

### ※ 진접선(4호선연장) 차량기지 건설사업

구 분	진접선(4호선연장) 차량기지 건설사업
위 치	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,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
규 모	차량기지 197,400㎡, 입출고선 4.9km, 창동차량기지 철거 등
사업기간	2018.12 ~ 2027.6
총사업비	7,078억원

#### 1) 도시철도법 제6조(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)

- ① 시·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생략>
  - ② <생략>
  - ③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, 공청회,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2)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6조(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 변경)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”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.
1. 노선 연장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
  2.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
  3.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

## 나. 검토의견

- 차량기지 사업은 '13년 12월 최초 기본계획이 수립·고시되었고 '16년 12월 차량기지 위치 등의 변경<sup>3)</sup>에 따라 한차례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며 '18년 9월 사업계획 승인·고시 후 '18년 12월 착공하여 '27년 6월 완공('25년 말 기준 공정률 약 87.6%)을 목표로 하고 있음<sup>4)</sup>
- 동 의견청취안은 당초 '13년 기본계획과 '16년 기본계획 변경시 적용되었던 사업기간('10~'19년)이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용지 보상 및 공사지연 등으로 '10~'27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(※추진경위 붙임 참조)

### ※ 사업기간 적용현황

구 분	'13년 기본계획	'16년 기본계획 변경	'18~'23년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9회	'24년 12월 이후 사업계획 변경 2회	동 의견청취안
사업기간	2010~ 2019년	2010~ 2019년	사업계획승인일 <sup>5)</sup> ~ 2024년 12월	사업계획승인일~ 2025년 12월	2010~ 2027년

주) '14년 7월 「도시철도법」 전부개정<sup>6)</sup> 시행 이후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신설

3) 국토교통부고시제2016-846호 : 진접선(당고개~진접)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  
< 철도차량기지(변경) >

○ 위치

- (당초)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111-2번지 일원

- (변경)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 40-4번지 일원

○ 면적 : (당초) 187,591㎡, (변경) 197,400㎡

○ 인입선 연장 : (당초) 3.1km, (변경) 4.9km

4) 일반적인 도시철도 사업의 절차

-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→ 기본계획 승인 → 기본 및 실시설계 → 사업계획 승인 → 공사 → 준공

5) 차량기지 사업계획 승인 고시일 : '18. 9. 5

6) 도시철도법[법률 제12216호, 2014. 1. 7., 전부개정, 2014. 7. 8., 시행]

- 동 사업은 '18년 사업계획 승인·고시 이후에도 사업면적 변경, 비상대피선 및 장비유치선 신설 등 총 11번의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차량기지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고,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기간의 차이가 1년 이상 발생해 「도시철도법」 시행령 제6조 등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 결과에서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기간 변경(연장)이 타당하다는 의견<sup>7)</sup>이 제출되었음
  
- 다만 '13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에는 관련법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없었으나 '14년 7월 「도시철도법」 전부개정 이후 '16년 기본계획 변경시에는 차량기지 위치 변경(진접읍 금곡리 산 111-2번지 → 산 40-4번지 일원) 등을 한 것은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었음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,

사업계획을 11번 변경할 동안 기본계획을 이에 맞춰 변경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현 차량기지 사업의 공사가 상당기간 진행되어 '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현 시점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행정절차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이

---

- 현행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분리하고,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(제5조 및 제6조)

7)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(안) 추진 계획(도시철도설계부-749호, '26.1.27.)

기본계획 변경(안) 사전협의를 위한 회신(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)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-268호, '26.2.3.)

에 대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

- 또한 동 사업 외에 위례선의 경우도 '20년 11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<sup>8)</sup> 시점의 사업기간은 '19~24년이나 '25년 11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<sup>9)</sup>에서는 '19~25년이며, 현재 공정상 완공<sup>10)</sup>은 '26년 하반기로 계획되어 기본계획 사업기간과 실제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동 사업과 같이 기본계획의 사업기간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

한편 실제 공사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연장될 경우 기본계획의 사업기간을 계속 변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제도적 개선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---

8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0-7호('20.11.3.) :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승인

9)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620호('25.11.12.) :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업계획 변경 승인

10) 제333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(도시철도국) 업무보고

※ 참고 : 추진경위

- '13.12.19. :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고시
- '16.12.12. :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(차량기지 위치) 고시
- '18. 9. 5. : 국토부 사업계획승인 고시
- '18.12.31. : 공사착공
- '19. 6. 7. : 市 사업계획 변경(차량기지 시설면적 변경) 고시
- '20. 3.25. : 市 사업계획 변경(도시계획시설(차량기지) 면적, 인입선 연장 정정) 고시
- '20. 7.14. : 市 사업계획 변경(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편입 면적 및 부번 변경) 고시
- '20. 7.17. : 市 사업계획 변경(오기 및 오류 정정) 고시
- '21. 2.18. :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사업계획 변경(비상대피선 및 장비유치선 신설) 고시
- '21. 9.27. : 市 사업계획 변경(추가 수용 및 사용필지 등 반영, 당초 누락 필지 반영, 현황측량 반영, 지장물 조서 추가) 고시
- '22. 9. 2. : 市 사업계획 변경(추가 수용 및 사용필지 등 반영) 고시
- '23. 6. 8. : 市 사업계획 변경(우회터널 신설, 현업사무실 위치변경, 기존 도로 매입) 고시
- '23.11.20. : 市 사업계획 변경(편입 면적 오기 정정, 추가 수용 필지 반영 등) 고시
- '24.12.20. : 市 사업계획 변경(수용 및 추가 사용(구분 지상권) 필지 반영) 고시
- '25.10.28. : 市 사업계획 변경(우회터널(신설 및 기존도로 매입), 위치 및 부지 변경(현업사무실 및 옥외자재적치장 등) 고시
- '26. 1. : 공사 중